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32

제출연월일 : 2018.09.21.
제 출 자 : 서초구청장

1. 제안이유

가. 『지방재정법』 제18조제3항에 의거

- 『지방재정법』 제18조제3항이 개정(2014. 05. 28.)되어 "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" 는 규정에 따라, 의결을 받고자 함.

나. 의결 요청 사항 : **『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』**

2. 주요골자

가. 출연의 대상 : 한국지방세연구원

나. 출연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지방세연구 강화, 지자체와 상호협력 강화, 지방세네트워크 포럼 강화
- 지방의 자주재원확충 및 지방정부의 안정적, 효율적 예산운용 기여
-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의 확충을 통한 지방정부의 혁신역량 제고하기 위해 필요

라. 출연금 및 산출내역

- 출 연 금 : 30,560천원
- 산출내역 :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203,739,355천원) × 0.015%
  ※ 산출근거규정 :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

마. 연도별 출연금 현황

(단위:천원)

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14,954	16,115	23,691	24,391	23,396	24,947	26,658	27,612

바. 출연 추진일정

- 2018. 09월 : 출연 의회 의결 요청
- 2018. 10월 : 구의회 의결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규정

- 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 지원)
- 지방세기본법 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- 지방세기본법 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-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참 고 사 항

한국지방세연구원 기관현황

○ 설립근거 : 지방세기본법 151조 (2011.2 설립등기, 2011.4 개원)
○ 임원현황 : 이사 12명(자치단체 이사 7명 포함), 감사 2명
○ 주요기능 :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
○ 사업개요
-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
-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한 네트워크포럼 운영, 학술행사 개최
-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연구동아리 지원
- 지방세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무 능률 제고

가. 지방재정법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**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**

나.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제20조(재정 지원)

① **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**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다. 지방세기본법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

① **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**한다.

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, 감사 2명을 둔다.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,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·선출하되, 이사장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.

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,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,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「민법」 제32조와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라.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

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

1. 1만분의 1.5
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
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
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